

綜合討論要旨

司會(서울대 宋相現 教授) : 현대의 福祉國家理念에 따라 國民生活의 對行政依存度가 증대되고 專門法知識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자 그에 관한 法曹職能分野도 多樣化 專門化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社會變動과 類似法曹職能의 問題點’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稅務士·公認會計士·司法書士·辯護士·公認仲介士에 관하여 다루었습니다만, 類似職能이 이에 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類似’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한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룰 수 있는 範圍를 한정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第1會議의 司會를 보신 李泰魯 教授님께 稅務士에 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李泰魯(서울대 教授) : 토론에서 지적된 것으로는 우선 그동안의 전통적인 法學教育이 우리나라에서 양적으로 급격한 팽창을 보이면서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租稅問題에 대하여 적절한 對備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大學에서 稅法講義를 듣고 租稅實務에 접근하는데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거의 10여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大學의 法學教育과 租稅實務가 괴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司法試驗이나 그밖의 試驗에서 稅法科目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租稅問題에 관련된 여러 職能相互間의 葛藤·衝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租稅問題에 관련하여 활동하는 專門家들로는 稅務士·公認會計士·辯護士가 있는데 이들간에 稅務代理 一元化의 관점에서 견해차가 존재하는 바 특히 논의되는 것은 稅務士와 辯護士간의 稅務關係訴訟의 代理問題입니다. 그러나 一般의 理解는 稅務士와 辯護士와의 관계를 職域에 관한 갈등·충돌보다 相互協力·補完하는 關係로 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稅務士가 稅務計算이나 稅務內規 등 實務에 소상하고 辯護士는 一般法理論이나 國稅基本法 등에 관한 知識에 정통하므로 각자 租稅問題에 관한 獨自的 領域을 구축하여 相互 service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밖에 租稅行政과 관련하여 專門法律家와 準法曹職能人들의 國民權益保護를 위한 공동된 問題意識이 요청되며 이를 위하여 各 職種間에 有機的인 연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稅務士의 固有機能에 관한 충분한 인식의 결여를 들 수 있겠습니다. 稅務士職域이 公認會計士나 辯護士의 機能 중 一部로써 형성된 것이 아니라 獨自的인 領域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司會：專門職域이면 어느分野건 나름대로의 獨自性을 인정하여야 하겠지요. 아울러 專門家로서의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稅務士制度의 많은 發展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公認會計士에 관하여 발표 부탁드립니다.

崔基元(서울대 教授)：저보다는 發表者께서 더 잘 아시는 問題이지만 제가 대신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公認會計士制度는 資格要件·試驗制度·各大學에서의 教科課程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制度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의 株式 崩과 함께 공인회계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됨에 따라 종래 理事會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하던 方式은 公認會計士의 獨立性 保障을 위해서 再考해야 한다고 봅니다.

稅務士制度가 생긴 이후 職域의 衝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公認會計士는 大企業이, 稅務士는 中小企業이 이용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公認會計士에게도 稅務業務能力을 인정하는 한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이 문제는 예컨대 稅務會計에 관한 것은 公認會計士가 잘 파악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法律的인 문제는 辯護士가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調和 속의 自由競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企業大型化·國際去來의 擴大傾向은 각 분야의 專門的인 service를 요구하지만,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고도의 專門性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 중 가장 실효성있고 저렴한 쪽의 助力으로 가능토록 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社會環境의 변화에 따라 모든 職域의 專門化가 필연적 요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法曹職域들이 독자적인 전문능력 배양에 힘쓰면 각자의 市場도 확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協力·補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司會：네, 감사합니다. 司法書士에 관해서는 梁教授님께 부탁드립니다.

梁承圭(서울대 教授)：몇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胡文赫 教授님의 발표에서는 해방이후의 司法書士制度의 變遷, 그리고 司法書士의 資格要件·業務監督·資質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으며, 李漢圭 司法書士께서는 특히 司法試驗合格者數의 증대와 함께 대두된 司法書士 廢止論에 대하여 상당히 설득력있게 反對論據를 주장하셨습니다. 辯護士와 司法書士와의 職域衝突 문제는 司法書士의 資質問題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司法書士의 자질이 더욱 향상되어 國民의 信賴를 얻게 되면 利用面 뿐만 아니라 職域도 더 확대되리라 생각되며, 司法書士 쪽에서도 자질향상을 위하여 研修, 自體資格審査 등의 自律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날 辯護士의 문턱은 높기 때문에 저렴하고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이 司法書士라 할 수 있으며, 辯護士 없는 지역에서 국민에게 法律 service를 제공하며 國選辯護人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인색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새로 개업하는 司法書士들이 대도시로 집중하지

않도록 司法書士會의 自律的 規制가 필요하겠지요. 法務法人 등에서와 같이 分業과 協業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制度를 연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立法論으로 가장 중요한 資質向上問題에 있어서 司法書士의 資格要件을 대폭 강화하고, 試驗을 통한 資格取得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法科大學의 教育도 이 방면으로 卒業生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司法書士의 報酬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논의되었습니다.

司會：司法書士制度는 資質問題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고, 최근 辯護士와 司法書士간에 마찰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司法書士의 존재의의는 현실적으로 결코 적다 할 수 없기 때문에 存廢여부보다는 問題點, 改善方向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요. 본 seminar에서 다루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辨理士에 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經濟發展에 따라 技術導入이나 無體財產權이 증대한 문제로 close-up되고 이들의 出許·代理·登錄 등의 紛爭에 관하여 國民의 여러가지 權利를 보호하는 辨理士職種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特許權 등 산업상의 無體財產權의 생성에 직접 관여하는 자로서 비중이 큰 역할을 하는 職域이라 할 수 있지요, 200여명이 채 못되는 집단이지만,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機能 등의 정립에 관하여 몇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辨理士試驗制度에서의 定員制 도입은 辨理士의 質的向上을 위해서 요청되며, 이와 관련하여 辨理士수요가 증대되는 추세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어느정도 합격자수의 可變性을 고려함이 어떤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特許廳 公務員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에 관해서도 資質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는데 資格要件의 강화가 요청됩니다. 또 다른 문제로서는 辯護士와의 충돌입니다. 辯護士와 辨理士간의 갈등은 法院에 있어서의 訴訟代理·開業辯護士의 數·辨理士의 資質問題와 관련하여 여타 職能間에 있어서보다 훨씬 첨예한 양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相互職域調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辨理士研修問題에 관해서는 최근 國際特許研修院이 설립되어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며, 한편으로는 大韓辨理士會의 자율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公認仲介士에 관하여 崔教授님께서 말씀해 주시길요.

崔松和(서울대 教授)：公認仲介士에 관해서는 第5會議가 맨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기분입니다만,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公認仲介士制度가 도입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 이 制度의 社會的 功獻度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엄청난 수의 仲介士를 배출하고도 아직까지 仲介人의 비율이 93%정도나 된다는 현실은 制度의 內容이나 運營上 問題點이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이 제도가 건전한 社會經濟的 去來風土造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事實은, 仲介士도 仲介人으로 개업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보아 자명합니다.

어쩌면 이번 seminar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해결의 關鍵이 經濟·社會倫理意識과 관련하여 道德性과도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不動產仲介業法과 公認仲介士制度의 문제점은 法改正이나 制度의 補完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 國民·政府·關聯分野 從事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司會：감사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른 諸般 法的 需要에 專門法曹職能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Seminar에서 다룬 것이 훌륭한 내용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問題意識을 갖고 앞으로 관심있게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토론을 마치겠습니다.